

인천지방법원 2021. 3. 19 선고 2020가합512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1. 9. 2 선고 2021나11846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1. 3. 19 선고 2020가합51234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

담당변호사 황용목, 이종화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섭

변론 종결 2021. 3. 5

판결 선고 2021. 3. 19

주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30. 체결된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2018. 12. 7.

접수 제44581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6. 6. 16. 주식회사 이이하 'D'라고 하고,주식회사의 경우 '주식회사' 기재를 생략한다)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2016.6. 17. "D는 원고에게 4,510,659,326원과 그중 3,0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6. 6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 "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고지되어 2016. 7. 7. 그대로 확정되었다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3838).

나. 원고는 2018 . 5. 17.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C에 대한 대여금채 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,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. 5. 25. C에 송달되었다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4491).

다. 그 후 원고는 2018. 8. 16. C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,2018. 12. 20."C은 원고에게 2, 470,404,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7. 11.부터 2018. 11. 12.까지는 연 5%의,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"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고지되어 2019. 1. 3.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(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663).

라. 한편,C은 2008 . 10. 13.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4. 2. 19. 8억 7,000만 원을 변제하여 11억 3,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던 중 위 대여금 채무를 담 보하기 위하여 2018. 11.

30.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억 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2. 7. 접수 제445811호 근저당 권설정등기를마쳤다.

마. C의 2017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28,282,884,343원, 부채총계는 103,009,974,110원으로 자본총계가 -74,727,089,767원이고, 2018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28,292,681,968원, 부채총계는 105,066,894,407원으로 자본총계가 -76,774,212,439원이었는바,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, 제3내지 7호증의 각 1, 2,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가 2018. 5. 17. D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. 5. 25. C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C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채권을 새로 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, D의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받았을 뿐인데,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41523판결 참조), 피압류채 권인 D의 C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. 11. 30.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D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관련 법리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판결 참조).

한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안의 경우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D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, C에 돈을 대여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,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D, C의 대표자가 동일하고,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와 C은 특수관계회사에 해당하는 점,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11억 3,000만 원이고 그 지연손해금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피담보채권 액수와 비교하여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염원섭판사 문지용판사 박연주

별지